

104. 갱신계약 약관변경 안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갱신계약 약관변경 안내 특별약관” (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의 자동갱신이 적용되는 기본계약 또는 특별약관(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자동갱신시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약관을 적용함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용합니다.

1. 기본계약이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 또는 자동갱신되는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험계약

제2조(특별약관의 적용)

-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자동갱신 적용시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 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